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7592
----------	-------

제안연월일 : 2026. 3. .
제안자 : 재정경제기획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 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심사경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3707호)	박성훈의원	2025-10-27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정·제안설명·검토보 고·대체토론·소위원회부, 제3차 조세소위원회 상 정·심사, 제5차 조세소위원회 상 정, 제433회 국회(임사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 심 사·의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제16294호)	정태호의원	2026-01-23	제432회 국회(임사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 원회 상정·제안설명·검 토보고·대체토론·소위 회부, 제433회 국회(임사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 심 사·의결

제433회 국회(임사회) 제2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대로 위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 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매도하고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하도록 해외 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환율위험 관리 수단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대한 양도 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국내 배당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해 적용하는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저세율국 소재 외국자회사인 특정외국법인이 해외 소득을 유보하지 않고 모두 국내에 배당하는 경우 그 배당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익금불산입을 적용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를 신설하여,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2026년에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100%로 상향하는 한편,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배당간주금액이 없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2026년에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100%를 익금에 불산입함(안 제23조 신설).

나. 거주자가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하여 국외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국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한시적 소득공제 과세특례를 마련함(안 제91조의26 신설).

다. 거주자가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100분의 5를 국외상장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한시적 소득공제 과세 특례를 마련함(안 제91조의27 신설).

4. 부대의견

가. 재정경제부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해외투자자의 조속한 국내투자 복귀 유도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의결된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국내시장 복귀계좌 상품 및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준비조치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3절에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 ① 내국법인(「법인세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은 제외한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을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수입배당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법인세법」 제18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없어 배당간주금액이 없는 같은

법 제27조제1항의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1.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2. 차입금의 이자 중 외국자회사에 출자한 금액이 내국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제89조의2제1항제1호 중 “제91조의25,”를 “제91조의25, 제91조의26 및”으로, “청년미래적금”을 “청년미래적금 및 국내시장복귀계좌”로 한다. 제2장제9절에 제91조의26 및 제91조의2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26(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이하 이 조 및 제91조의27에서 “국외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국외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거주자가 2025년 12월 23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국외상장주식을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국내시장복귀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양도할 것
 2. 제1호에 따라 국외상장주식을 양도하여 국내시장복귀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그 납입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국내시장복귀계좌의 잔액이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어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사실이 없을 것
- ② 제1항에 따라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

가. 거주자가 국외상장주식을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양도(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하여 양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100

나. 거주자가 국외상장주식을 2026년 6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80

다. 거주자가 국외상장주식을 2026년 8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50

2. 거주자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국외상장주식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재산(이하 이 조에서 “국외상장주식대체재산”이라 한다)의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비율

③ “국내시장복귀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

1. 납입한도가 5천만원(「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모든 금융회사등에 가입한 국내시장복귀계좌의 납입한도 합계액을 말한다) 이내일 것

2. 다음 각 목의 재산으로 운용할 것

가.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80 이상을 나목에 따른 주식에 투자하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재산으로 국외상장주식 또는 국외상장주식대체재산을 취득한 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나. 「소득세법」 제88조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다. 예탁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④ 제1항에 따라 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국내시장복귀계좌 납입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납입한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그 인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

좌보유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납입한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거주자가 제4항 본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양도소득세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111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⑥ 국외상장주식의 보유에 관한 판단기준,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국내시장복귀계좌의 운용·관리방법, 납입한도의 기준, 국외상장주식의 양도방법, 공제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27(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대한 과세특례) ① 환율의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생상품(이하 이 조에서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을 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1. 거주자가 2025년 12월 23일에 보유하고 있던 국외상장주식의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 투자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외상장주식을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

②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 투자의 판단기준, 공제 적용 방법, 공제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률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같은 개정규정 제1항의 외국자회사로부터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91조의26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내시장복귀계좌를 개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91조의26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내시장복귀계좌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가입한 것으로 보아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26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같은 개정규정 제3항에 따른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해 같은 개정규정 제1항의 국외상

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27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같은 개정규정 제1항에 따른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23조(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 ① 내국법인 (「법인세법」 제57조의2제1항 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은 제외 한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외 국자회사[내국법인이 의결권 있 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의 100분의 10(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 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이익의 배 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 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 라 한다)을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은 경 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의4제1항 을 적용할 때 해당 수입배당금 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p>

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법인세법」 제18조의4제4
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제조
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없어 배당간
주금액이 없는 같은 법 제27조
제1항의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
월 31일까지 받은 수입배당금액
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
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4
제1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
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
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
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
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익금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금액
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1.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

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증
권

2. ~ 4. (생략)

② ~ ⑥ (생략)

<신설>

국내시장복귀계좌-----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91조의26(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

외에서 거래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이하 이 조 및 제9

1조의27에서 “국외상장주식”이

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모두 갖추어 2026년 12월 31

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제2

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국외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과

세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거주자가 2025년 12월 23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국외상

장주식을 제3항 각 호의 요건

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

에서 “국내시장복귀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양도할 것

2. 제1호에 따라 국외상장주식

을 양도하여 국내시장복귀계

좌에 납입한 금액을 그 납입

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국내 시장복귀계획의 잔액이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어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사실이 없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과세대상 소득 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

가. 거주자가 국외상장주식을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양도(국내시장복귀계획을 통하여 양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100

나. 거주자가 국외상장주식을 2026년 6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80

다. 거주자가 국외상장주식을

2026년 8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 금액의 100분의 50

2. 거주자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국외상장주식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하 이 조에서 “국외상장주식대체재산”이라 한다)의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비율

③ “국내시장복귀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

1. 납입한도가 5천만원(「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모든 금융회사등에 가입한 국내시장복귀계좌의 납입한도 합계액을 말한다) 이내 일 것

2. 다음 각 목의 재산으로 운용할 것

가.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80 이상을 나목에 따른 주식에 투자하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재산으로 국외상장주식 또는 국외상장주식대체재산을 취득한 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나. 「소득세법」 제88조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다. 예탁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④ 제1항에 따라 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국내시장복귀계좌 납입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납입한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그 인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

야 한다. 다만, 계좌보유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납입한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거주자가 제4항 본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양도소득세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111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⑥ 국외상장주식의 보유에 관한 판단기준,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국내시장복귀계좌의 운용·관리방법, 납입한도의 기준, 국외상장주식의 양도방법, 공제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91조의27(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대한 과세특례) ① 환율의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이하 이 조에서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이

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을 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 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1. 거주자가 2025년 12월 23일에 보유하고 있던 국외상장주식의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 투자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외상장주식을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

②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 투자의 판단기준, 공제 적용 방법, 공제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